중년기 경제적 지위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미 진*, 김 미 혜**, 홍 백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이 중년기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소득은 남성고령자 개인의 균등조정가구소득으로,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중년기 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불평등 요인분해는 대수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MLD) 지표를 사용하였다. 종단면 자료 분석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소득불평등과의 연관관계를 관찰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규명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사적 이전소득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적·사적 이전소득 모두 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매해 변동폭이 비교적 큰 데 비하여,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고령자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 중년기 직종, 중년기 고용형태의 순서대로 소득불평등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남성고령자가 과거 생애주기 동안 경제적으로 유리/불리하였던 조건이 누적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중년기 고용형태나 직종보다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중년기 근로소득과의 밀접한 연관관계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Ⅰ. 서론

노년기 소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우리사회의 노인빈곤의 심각성으로 인해 주로 노인의 절대적·상대적 빈곤 문제에 주목하거나,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노인세대가 얼마나 빈곤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구인회·손병돈, 2005; 최현수·류연규, 2003; 최희경, 2004; 홍경준, 2002; 홍백의, 2005). 최현수·류연규(2003)에 의하면, 2002년 현재 노인 절대빈곤율은 9.3%로 전체 빈곤율에 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21 박사후 과정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조교수

해 무려 4.4%p가 높았으며, 1990년에서 2002년 동안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7%p가 4.9% 증가한 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7%p가 증가하여 무려 4배 이상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세대간 상대적 빈곤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과 달리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은,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과거 노인세대는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함에 따라 노동경력과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도입이 1988년에야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낮았던 점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최성재, 1999). 즉,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공적 연금 제도가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제도가 취약하였고, 노인집단내 경제활동 경력 및 경제상태가 동질적인 성향이 강하여 중년기 소득불평등이 노년기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는데,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소득불평등을 횡단면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한 연구(이가옥·이현송·김정석·이미진, 2002)이거나 전체인구를 5세 간격으로 나누어서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과 고령화에 대한 연구(임병인·전승훈, 2005), 그리고 향후 공적 연금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현재 근로연령계층이 노인층이 되었을 때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연구(박경숙, 2001; 최현수, 2002) 등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공적 이전소득 수급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비록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공적 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대에는 65세 이상 중 공적 연금 수급자가 10%미만이었으나, 2004년에는 65세 이상 중 13.9%로 늘어났으며(통계청, 2005a),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26.2%가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데 비하여,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공적 연금 수급율이 6.2%에 달해 성별에 따라 공적 연금 수급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다음으로, 2000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뀜에 따라 빈곤선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라가고, 생계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1] 공공부조의 생계급여액이 소득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공적 이전소득 수급자의 증가는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최근 들어 고령자 집단의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줄어들고, 노동경력 과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2005b), 고령층 중 저연령집단인 55~64세는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20.8%로 나타나 65~79세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51.0%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고, 55~64세의 경우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5~79세 중 전문사무직 종사자 비율은 5.9%). 또한 박경숙(2003)

1) 1998년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2.6%에 그쳤으나(보건복지부, 1999),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8.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의 연구에서 보듯이 5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일자리 이동 및 은퇴과정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였다가 영구히 은퇴상태에 이르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일자리 이동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래 노인세대가 아닌, 현재 노인세대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지, 더 나아가 과거 노동경력과정이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 혜택으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01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홍경준(2002)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는 낙후된 공적 연금체계를 대신하여 가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적 이전소득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던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 중 우리사회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이 중년기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정의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50세 이상의 준고령자까지를 포함한 50세 이상의 고령자로 연령범위를 넓힌 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만 53세인 것에서 보듯이(통계청, 2005b) 노년기 소득을 논할 때에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 전체집단이 아닌 남성만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것은, 개인의 물리적 복리는 개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Crystal, 1996), 고령자 여성의 가구소득은 고령자 여성 본인보다는 가족력과 다른 가구원(배우자)의 노동경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McLaughlin & Jensen, 2000), 그리고 남성고령자는 공적 연금 수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소득불평등이 공적 이전소득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남성고령자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고령자 집단내 경제상태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에 대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누적유리/불리가설(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hypothesis)에 의하면, 과거 중년기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년기에도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가정한다(Dannefer, 2003; McLaughlin & Jensen, 2000).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기에 고임금을 받는, 질 높은 고용조건에서 일을 하고, 질병이나 재해, 사고, 실업 등을 경험할 위험이 낮으며, 고임금은 자산축적, 저축, 투자, 개인연금 가입 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고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은 중년기에 질 낮은 고용조건 하에서 일을 하거나 질병이나 재해,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없기에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노년기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 정부의 공공부조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과거 생애주기동안 경제적으로 유리/불리한 조건이 누적됨에 따라 노년기에는 소득불평등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Crystal and Waehrer (1996)에 의하면 과거 중년기에 고소득의 수입을 가졌던 고령자는 비교적 고연령까지 근로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소득을 가지게 되고, 개인연금 등으로 고소득을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Xiao, Malroutu, & Yuh(1999)에 의하면 미국 은퇴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년기 경제적 지위는 노년기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 수급 및 연금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국내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구소득수준을 조사한 1998년(정경희 외, 1998)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내 분배의 형평성을 전기노인(65~69세)과 후기노인(70세 이상)으로 비교한 이가옥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후기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어 노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소득불평등의 차이가 연령차이(age change)이기보다는 동년배효과에 따른 연령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동패널의 1998~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세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임병인·전승훈(2005)의 연구에 의하면, 50~54세, 55~59세, 60~65세, 65~69세, 70세 이상 집단의 경우 1999~2001년 사이에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다가, 2002년에는 연령집단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심화되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는 관찰기간이 짧고 소득불평등은 기간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둘째, 누적유리/불리가설에 대조되는 가설인 leveling hypothesis는 노년기에는 공적 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공적 이전소득은 빈곤층에게 유리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소득불평등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캐

나다의 1922~1926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코호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us, 2000). 이는 캐나다의 연금체계가 과거 경제활동경력과의 연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최저급여액 수준이 높고,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전체 인구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김진욱(2004)의 연구에서 보듯이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이전소득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완전노령연금개시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10년 가입자에게 감액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4년 현재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이 13.9%에 달하고 있다.[2] 또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3]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미약하여 중년기 소득불평등을 노년기에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감소효과의 절대수준이 작기 때문이다(김교성, 2003; 박찬용, 2003).

박경숙(2001)은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40~54세 중장년층이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동경력과정과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노후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노후에 빈곤해질 확률이 더 높으며 국민연금제도 미가입은 노후에 빈곤해질 확률을 증가시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박경숙(2001)의 연구는 현재 고령자층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소득불평등보다는 노후빈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현세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최현수(2002)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개별 가구주의 연금급여액을 추정, 2001~2024년 사이의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와 지위에 따른 개인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노년기에 유지·심화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고령자 세대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과, 국민연금 수급액에만 한정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리사회에서는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비해 노인빈곤을 축소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며(홍경준, 2002), 사적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0).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의 주요한 소득원천으로 보고되어,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6.9%가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석재은(2000)에 의하면, 사적 이전소득액은 노인의 가구소득을 5분위

2) 2004년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11.0%,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2.9%이다(통계청, 2005a).
3) 2004년 현재 65세 이상 중 8.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다(보건복지부, 2005).

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소득 1분위나 소득이 높은 4, 5분위보다 저소득과 중간계층인 소득 2, 3분위에서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자료의 매년 2/4분기 원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교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사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며 근로자가구보다는 비근로자가구에서 축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 감소효과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비해 소득불평등을 더 많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4; 박찬용, 2003)

소득불평등에 대한 세 번째 가설로, 노년기 소득불평등은 중년기 소득불평등의 연장 또는 유지를 제언하는 지위유지가설(status maintenance hypothesis)이 있다(Campbell & Henretta, 1980; Henretta & Campbell, 1976).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년기의 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유지·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년기 소득불평등은 노년기에도 유지된다고 보는 가설이다. Henretta & Campbell (1976)의 연구에 의하면, 퇴직 이전의 소득결정요인이 퇴직 이후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남아있음을 근거로, 지위유지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퇴직 이전의 소득결정요인이 퇴직 이후의 소득결정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뿐, 소득불평등이 심화 또는 완화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Crystal & Waehrer, 1996).

본 연구에서는 누적유리/불리가설에서 제언하는 것처럼 남성고령자 집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 후,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 고용형태 및 직종과 같은 중년기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가?
연구문제 2: 사적 이전소득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가?
연구문제 3: 공적 이전소득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가?
연구문제 4: 중년기 경제적 지위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1998~2005년) 개인자

료와 가구자료를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1998년부터 매년 1회씩 도시지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서, 국내의 종단적 연구자료로서는 관찰기간이 가장 길다. 또한 이 자료는 기존의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서 제외되었던 1인 가구와 비임금근로자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농어촌 가구가 제외되고 도시지역 가구만이 표본으로 추출되어, 소득불평등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구자료와 해당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은 매해 가구자료에서,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1차년도 개인자료에서, 그리고 중년기 고용형태 및 직종은 5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선택하여, 이들 자료를 고령자 개인별로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료에서 만 50세 이상 남성고령자 중 1~8차년도 모두에 조사한 응답한 자 864명 중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833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4] 50세 이상 남성 중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는 고학력 비중이 낮았으며(예를 들면,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는 고졸 이상이 39.7%인데 비하여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고졸 이상이 46.5%이었음), 평균 연령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분석 제외 사례의 1차년도 평균 연령은 60.8세, 분석 포함 사례의 1차년도 평균 연령은 59.9세) 1차년도 가구소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분리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가구단위의 분석은 독거노인이 노인부부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비노인 가구주에 속하는 노인은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Crystal,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가구가 아닌, 노인개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을 1차년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들 집단이 교육수준과 중년기 고용형태, 직종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상이하고, 남성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퇴직연령은 만 55세로(통계청, 2005b) 55세를 전후해서는 근로소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만 50~54세 이상(1998년 60~64세 이상) 집단의 경우 10년 가입기간을 충족시킴으로써 감액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1988년 당시 만 55세 이상(1998년 65세 이상)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이들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소득은 남성고령자가 속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매년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전년도 연간가구소득의 총액을 질문하고 있다.[5] 남성고령자의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

4) 864명 중 소득이 결측값인 1사례, 고용형태가 결측값인 3사례, 직종이 결측값인 2개 사례를 제외하고, 생애 주된 일자리가 무급 가족종사자인 경우와 경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25사례를 삭제하였다.

5) 1차년도인 1998년 조사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2차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을 질문하여 1차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가구내 소득은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소득이 전혀 없으나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고령자 개인의 경제 상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고령자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원(특히 자녀)의 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고령자 개인의 특성과 가구소득과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Crystal, 1996).

소득변수는 가구자료의 가구소득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OECD의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인 균등조정가구소득=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의 공식을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하였다.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자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통계청의 경상소득 개념에 해당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보조금과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보조금(공공부조 생계급여 포함)과 사회보험 급여액이 포함된다. 2차년도부터는 이전소득의 원천을 공적과 사적 이전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1차년도에는 이전소득의 원천을 구분하지 않아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2~8차년도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년기 경제적 지위는 남성고령자의 과거 노동경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수준을 통해 중년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교육수준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년기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변수이다. 이 변수는 1차년도 개인자료의 교육수준 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둘째, 중년기 고용형태로 이에 대한 범주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중년기 직종은 농어업, 비숙련근로자, 판매서비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였다.[6] 중년기 고용형태와 직종은 5차년도 부가조사 당시 만 5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자료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종사한 일 중 생애에서 가장 주된(중요한)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직종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령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인 개인의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소득불평등 지표로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데, 수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의 값이 된다.

$$Gini=\sum\sum(y_i-y_j)/\mu n^2 \qquad (1)$$

μ: 개인의 가구소득의 평균
y_i: 개인i의 가구소득
n: 분석 대상 개인의 수

도 소득기간과 2차년도 소득기간이 일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나(임병인·전승훈, 2005),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 또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6)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성고령자 중 중년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무급 가족종사자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지니계수 A를 산출한 이후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지니계수 B를 산출하여 A에서 B를 뺀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사적 이전소득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적 이전소득의 개선효과는 지니계수 B에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의 지니계수 C를 구하여 B에서 C를 뺀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공적 이전소득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니계수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요인분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수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MLD) 지표를 사용하였다.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종합지표의 하나인 대수편차 평균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구소득은 로그정규분포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식 (2)와 같이 대수편차 평균은 개인의 가구소득을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에 대하여 그 편차를 평균한 수치로 정의한다.

$$MLD=\sum[\ln(\mu)-\ln(y_i)]/n \quad (2)$$

μ: 개인의 가구소득의 평균

y_i: 개인i의 가구소득

대수편차 평균은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에 최저치가 0이 되며, 다른 지표들보다 소득분포에서 저소득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수편차 평균은 소득불평등도를 구성집단별로 요인분해하는 데 적합하며, 전체 불평등도는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내 불평등도로 수식 (3)과 같이 분해되기 때문에, 전체 불평등도에서 교육수준, 고용형태 및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집단간 불평등도)을 통해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소득불평등도의 연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MLD=\sum V_k MLD_k+\sum V_k \ln(1/\lambda_k) \quad (3)$$

MLD_k: k집단의 소득불평등도

V_k: k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equiv n_k/n$)

λ_k: k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Ⅳ. 연구결과

분석에 포함된 표본(n=833)은 <표 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초졸 이하가 38.5%, 중졸이 21.7%, 고졸 이상이 39.7%로 나타났으며, 저연령집단에 비해 고연령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 고용형태 역시 자영업이 가장 많았으며(45.8%), 그 다음으로 상용직(40.0%), 임시일용직(1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년기 직종은 비숙련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고(42.9%) 다음으로 전문직(23.5%), 농어업(20.9%), 판매서비스직(12.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저

연령집단에 비해 고연령집단은 자영업 비율이 높고 상용직이 낮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고연령집단일수록 비숙련근로자 비중이 낮고 농어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비율은 연령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년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이나, 가구소득은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의 총액을 물었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대한 기간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가 된다.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낮아졌다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승, 20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상승을 하다가, 2002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3년에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다시 증가하였다가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평균소득의 증가는 소수의 사례가 거액의 부동산매매차익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령집단별 표본의 특성

(단위: %, 만원)

	전체집단 (n=833)	50~54세 (n=236)	55~59세 (n=214)	60~64세 (n=170)	65세 이상 (n=213)
교육수준					
초졸 이하	38.5	20.8	35.1	45.3	56.3
중졸	21.7	26.3	25.7	12.4	20.2
고졸 이상	39.7	52.9	39.3	42.4	23.5
중년기 고용형태					
상용직	40.0	41.1	40.2	41.8	37.1
임시일용직	14.2	13.9	15.0	15.9	12.2
자영업	45.8	45.0	44.8	42.4	50.7
중년기 직종					
농어업	20.9	13.1	17.3	21.8	32.4
비숙련근로자	42.9	47.0	48.1	41.2	34.3
판매서비스직	12.7	17.0	11.7	14.1	8.0
전문직	23.5	22.9	22.9	22.9	25.4
평균소득(표준편차)					
1997년	981.6(1,268.9)	1,184.5(1,124.4)	1,000.1(827.6)	939.4(897.9)	771.8(1,848.9)
1998년	952.3(875.7)	1,166.1(936.5)	1,046.8(998.5)	898.4(827.9)	663.8(586.1)
1999년	1,061.5(1,212.1)	1,333.8(1,280.4)	1,130.93(1,108.9)	1,083.7(1,630.7)	672.4(594.4)
2000년	1,073.7(1,172.5)	1,416.6(1,441.0)	1,149.5(894.0)	1,037.0(1,426.7)	647.0(589.3)
2001년	1,406.6(2,304.5)	1,687.0(1,416.9)	1,692.6(3,416.5)	1,290.8(1,492.6)	901.1(2,162.2)
2002년	1,312.43(1,239.2)	1,784.5(1,190.6)	1,375.4(1,603.1)	1,204.8(1,419.1)	812.0(958.4)
2003년	1,497.1(2,046.3)	1,999.1(1,978.7)	1,465.4(1,603.1)	1,409.5(2,131.8)	1,042.5(2,322.4)
2004년	1,477.2(1,890.2)	1,9596(1,367.6)	1,678.8(3,096.7)	1,226.7(984.3)	939.9(949.3)

주: 연령은 1차년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임.

<표 2>의 사적 이전소득 수급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998~2000년에 비해 2001~2004년에는 사적 이전소득을 받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약화되었던 가족의 사적 부양기능이 2000년 이후 가족의 경제상태가 개선되면서 고령자에게 사적 이전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연령집단에 비해 고연령집단이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연령집단일수록 가족의 사적 부양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 수급률은 공공부조를 포함한 정부 보조 수급률과 사회보험 급여 수급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 보조 수급률의 경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급률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어 1999년 21.6%가 정부 보조를 받은 데 비해, 2000년에는 23.9%가 정부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는 수급률이 37.8%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집단일수록 정부 보조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집단에서 2001년 이후 정부 보조 수급률 상승폭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연령집단별 사적·공적 이전소득 수급률

(단위: %)

	전체집단 (n=833)	50~54세 (n=236)	55~59세 (n=214)	60~64세 (n=170)	65세 이상 (n=213)
사적 이전소득 수급률					
1998년	19.1	5.9	10.3	18.8	42.7
1999년	18.1	5.1	7.9	19.4	41.3
2000년	19.1	4.2	6.1	23.5	45.1
2001년	28.8	10.1	14.5	35.3	58.7
2002년	24.6	9.3	16.8	28.8	46.0
2003년	29.2	13.1	18.7	30.6	56.3
2004년	37.8	18.6	26.6	43.5	65.7
공적 이전소득 수급률					
정부보조(공공부조 포함) 수급률					
1998년	18.6	6.8	3.3	8.2	55.4
1999년	21.6	6.8	7.5	15.9	56.8
2000년	23.9	6.4	5.1	25.9	60.6
2001년	24.4	4.2	6.1	34.1	57.3
2002년	37.8	8.1	7.5	64.1	80.3
2003년	41.1	8.5	13.6	71.2	80.8
2004년	45.9	9.8	22.0	80.0	82.6
사회보험 급여 수급률					
1998년	7.6	4.2	3.3	14.7	9.9
1999년	10.1	5.1	7.9	18.2	11.3
2000년	13.5	5.1	13.1	23.5	15.0
2001년	18.0	4.7	21.0	29.4	20.7
2002년	21.9	5.5	27.6	30.6	27.2
2003년	25.6	8.1	31.8	31.8	33.8
2004년	28.9	14.0	43.9	31.2	31.9

주: 연령은 1차년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임.

사회보험 수급률 역시 전반적으로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998년에는 7.6%만이 사회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2004년에는 28.9%가 사회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4세의 경우, 사회보험 수급률이 1998~2002년 동안 4~5%내외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03년에는 8.1%, 2004년에는 1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사회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고령자 개인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사회보험 급여를 과거에 받았는지 또는

현재 받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3~54세 고령자가 만 60세가 되면서 감액노령연금과 특수직역역금 수급자가 생겨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5~59세의 경우 사회보험 수급률이 매해 약 5%p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역시 만 60세 이상의 감액노령연금 수급의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자 증가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발생에 따른 것이다. 60~64세 역시 사회보험 수급률이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감액노령연금 수급의 전제조건인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이상 집단의 사회보험 수급률 증가는 보훈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문제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소득(근로+자산+사적이전+공적 이전)의 지니계수 C를 종단면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지니계수가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증가, 2001년에는 1997년보다 지니계수가 높아졌으며, 2002년에는 지니계수가 다시 낮아졌다가, 2003년에는 지니계수가 증가, 2004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지니계수의 추세 또한 전체집단의 지니계수의 추세와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1998년과 199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지니계수가 낮아졌다가 2000년,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지니계수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종단면으로 살펴본 지니계수의 변화는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는 기간효과가 더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한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 효과를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분석대상 기간이 8년으로 짧아 5세 간격으로 분리한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종단면 자료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횡단면 자료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경상소득의 지니계수(C)를 횡단면으로 보면 거의 모든 해에서 저연령집단보다 고연령집단의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횡단면 자료분석 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동년배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분석 결과를 연령변화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연구문제 2: 사적 이전소득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가?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종단면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받기 이전(즉,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의 지니계수 A와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받은 이후의 지니계수 B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니계수 A를 종단면으로 추적하여 보면, 지니계수 C와 거의 동일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저연령집단에 비해 고연령집단의 근로 및 자산소득의 지니계수인 A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연령 증가로 인해 근로 및 자산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니계수 B의 종단면·횡단면 변화 역시 지니계수 A의 종단면·횡단면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A에서 B를 뺌으로써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산출하였다.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의 종단면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1999년 50~54세 집단)를 빼고는 지니계수를 낮춤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횡단면으로 살펴보면, 매해 저연령집단에 비해 고연령집단의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커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및 개선효과의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근로+자산 지니계수(A)	전체	0.4547	0.4502	0.4559	0.4856	0.5400	0.5015	0.5402	0.5379
	50~54	0.3618	0.3586	0.3580	0.3767	0.3875	0.3395	0.3907	0.3734
	55~59	0.3634	0.3792	0.3809	0.3849	0.5433	0.4178	0.4343	0.5127
	60~64	0.4972	0.4816	0.4889	0.5521	0.5541	0.5645	0.6281	0.5462
	65+	0.5594	0.5542	0.5610	0.5973	0.6195	0.6609	0.6855	0.6804
근로+자산+사적이전 지니계수(B)	전체	-	0.4163	0.4245	0.4532	0.5158	0.4683	0.4975	0.4695
	50~54	-	0.3571	0.3589	0.3751	0.3821	0.3350	0.3822	0.3634
	55~59	-	0.3667	0.3679	0.3743	0.5335	0.4061	0.4159	0.4699
	60~64	-	0.4480	0.4541	0.5256	0.5129	0.5260	0.5814	0.4646
	65+	-	0.4578	0.4644	0.4845	0.5785	0.5578	0.5542	0.4923
근로+자산+사적이전+공적이전 지니계수(C)	전체	0.4392	0.4059	0.4042	0.4267	0.4836	0.4258	0.4522	0.4260
	50~54	0.3689	0.3552	0.3465	0.3623	0.3732	0.3243	0.3712	0.3485
	55~59	0.3516	0.3654	0.3587	0.3602	0.5034	0.3702	0.3749	0.4305
	60~64	0.4312	0.4268	0.4256	0.4764	0.4762	0.4618	0.5041	0.4057
	65+	0.5630	0.4457	0.4452	0.4669	0.5356	0.5032	0.4984	0.4342
사적이전소득 개선효과 (A-B)	전체	-	0.0339	0.0314	0.0324	0.0242	0.0332	0.0427	0.0684
	50~54	-	0.0015	(0.0009)	0.0016	0.0054	0.0045	0.0085	0.0100
	55~59	-	0.0125	0.0130	0.0106	0.0098	0.0117	0.0184	0.0428
	60~64	-	0.0336	0.0348	0.0265	0.0412	0.0385	0.0467	0.0816
	65+	-	0.0964	0.0966	0.1128	0.0410	0.1031	0.1313	0.1881
공적이전소득 개선효과 (B-C)	전체	0.0155*	0.0104	0.0203	0.0265	0.0322	0.0425	0.0453	0.0435
	50~54	(0.0071)*	0.0019	0.0124	0.0128	0.0089	0.0107	0.0110	0.0149
	55~59	0.0118*	0.0013	0.0092	0.0141	0.0301	0.0359	0.0410	0.0394
	60~64	0.0660*	0.0212	0.0285	0.0492	0.0367	0.0642	0.0773	0.0589
	65+	(0.0036)*	0.0121	0.0192	0.0176	0.0429	0.0546	0.0558	0.0581

주: *1997년에는 이전소득의 원천을 구분하지 않아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개선효과의 합산된 효과만을 알 수 있음.

3) 연구문제 3: 공적 이전소득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보기에 앞서,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하기 이전의 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 B와 공적 이전소득 수급 이후의 소득의 지니계수 C를 비교하여 보았다. 종단면과 횡단면 분석 결과 모두, 지니계수 C는 지니계수 B와 거의 유사한 변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B에서 C를 빼서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계산하였다.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종단면으로 살펴보면, 연령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불평등을 점차 더 많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국민연금제도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55~59세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은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60~64세 집단은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생계급여의 인상 효과(김교성, 2002; 홍경준, 2002)와 공적 연금 수급자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0~54세 집단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집단은 대부분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비율이 미미하고 공적 연금 수급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횡단면으로 살펴보면, 매해 60~64세 집단의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항상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매해 이 집단의 사회보험 수급률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표 2> 참조). 이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이미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세 이상 집단과 달리, 60~64세 집단 중 일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인 1998년부터 감액노령연금 등을 받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60~64세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1998년에서 2000년까지는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보다 큰 반면, 2001~2003년까지는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국내 문헌연구와 대조를 이루었다(김진욱, 2004; 박찬용, 2003; 홍경준, 2002). 이는 본 연구가 기존 선행 연구에 비해 연구기간이 비교적 더 길고, 대상인구 집단이 남성고령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교성(2003), 박찬용(2003), 그리고 홍경준(2002)의 지적처럼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사적 이전소득과 비교하여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하였는데, 이러한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2000년대 이후 특히 남성고령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연금 수급자의 증가 역시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200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보다 높아, 아직까지 현 세대 남성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보다 소득불평등 개선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문제 4: 중년기 경제적 지위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남성고령자의 교육수준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수준의 차이가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지를 대수편차 평균을 교육수준 집단간 불평등과 집단내 불평등으로 요인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해 살펴보면, 해마다 변동이 심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 6.3%에서 최고 13.4%에 달해,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대부분은 집단내 소득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호외(2002)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1997년과 2000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불평등을 교육수준별로 요인분해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면(집단간 불평등도는 1997년에는 전체 불평등도의 18.1%, 2000년에는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의 남성고령자의 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이 전체 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 집단은 근로소득이외에도, 자산소득과 공적·사적 이전소득과 같이 소득의 원천이 다양하여 교육수준이 소득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단면으로 추적하여 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누적유리/불리가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누적유리/불리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4> 연령집단별 가구소득에 대한 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대수편차 평균) 요인분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집단	전체불평등	0.5630	0.4751	0.4171	0.5121	0.5524	0.4656	0.4421	0.3386
	집단내불평등	92.6	93.7	91.0	92.1	93.3	90.4	90.4	86.6
	집단간불평등	7.4	6.3	9.0	7.9	6.7	9.6	9.6	13.4
50~54세	전체불평등	0.4714	0.3527	0.2696	0.3371	0.2784	0.1866	0.2902	0.2329
	집단내불평등	96.2	94.0	89.8	92.4	88.1	86.2	94.2	85.7
	집단간불평등	3.8	6.0	10.2	7.6	11.9	13.8	5.8	14.3
55~59세	전체불평등	0.4649	0.5060	0.3658	0.3635	0.6381	0.3915	0.3338	0.3493
	집단내불평등	95.3	97.4	96.3	96.3	97.8	94.3	95.4	85.9
	집단간불평등	4.7	2.6	3.7	3.7	2.2	5.7	4.6	14.1
60~64세	전체불평등	0.5248	0.5492	0.4654	0.5881	0.5008	0.5092	0.5156	0.3025
	집단내불평등	93.0	92.4	89.9	91.5	86.9	88.9	87.2	94.4
	집단간불평등	7.0	7.6	10.1	8.5	13.1	11.1	12.8	5.6
65세 이상	전체불평등	0.7590	0.4469	0.4830	0.6580	0.6853	0.6646	0.5033	0.3303
	집단내불평등	87.7	95.8	95.5	94.7	92.6	95.3	93.9	93.8
	집단간불평등	12.3	4.2	4.5	5.3	7.4	4.7	6.1	6.2

교육수준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횡단면으로 살펴보면, 1997년을 제외하고는 50~54세 집단이 55~59세 집단에 비해, 그리고 60~64세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연령계층인 50~54세 집단은 교육수준에 의해 근로소득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비해, 55~59세 집단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준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0~64세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 비중이 높은 것은, 전자의 집단이 공적 연금 수급대상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5~59세와 60~64세 집단의 차이는 55~59세는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상실하고, 공적 연금 수급조건의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적 연금 수급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60~64세는 공적 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55~59세의 사회보험 급여 수급률이 60~64세보다 높아진 2004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후자집단보다 전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 연령집단별 가구소득에 대한 고용형태별 소득불평등(대수편차 평균) 요인분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집단	전체불평등	0.5630	0.4751	0.4171	0.5121	0.5524	0.4656	0.4421	0.3386
	집단내불평등	96.7	96.5	96.7	97.5	99.0	98.5	98.7	98.2
	집단간불평등	3.3	3.5	3.3	2.5	1.0	1.5	1.3	1.8
50~54세	전체불평등	0.4714	0.3527	0.2696	0.3371	0.2784	0.1866	0.2902	0.2329
	집단내불평등	96.4	95.0	92.9	94.0	98.6	95.5	92.6	91.4
	집단간불평등	3.6	5.0	7.1	6.0	1.4	4.5	7.4	8.6
55~59세	전체불평등	0.4649	0.5060	0.3658	0.3635	0.6381	0.3915	0.3338	0.3493
	집단내불평등	98.7	98.7	98.0	98.6	94.0	99.5	99.9	96.0
	집단간불평등	1.3	1.3	2.0	1.4	6.0	0.5	0.1	4.0
60~64세	전체불평등	0.5248	0.5492	0.4654	0.5881	0.5008	0.5092	0.5156	0.3025
	집단내불평등	97.1	94.3	95.8	97.3	99.1	97.3	96.3	99.4
	집단간불평등	2.9	5.7	4.2	2.7	0.9	2.7	3.7	0.6
65세 이상	전체불평등	0.7590	0.4469	0.4830	0.6580	0.6853	0.6646	0.5033	0.3303
	집단내불평등	90.8	95.9	97.0	97.8	96.0	98.6	99.5	99.0
	집단간불평등	9.2	4.1	3.0	2.2	4.0	1.4	0.5	1.0

중년기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중년기 고용형태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년기 고용형태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에 달해, 대부분의 소득불평등은 집단간 불평등보다는 집단내 불평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6.3~13.4%인 것과 비교하면, 고용형태가 교육수준에 비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년기 고용형태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단면으로 추적하여 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집단간 불평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년기 고용형태가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횡단면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소득불평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몇 개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50~54세 집단이 55~59세 집단에 비해, 그리고 60~64세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고용형태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년기 직종을 농어업, 비숙련근로자, 판매서비스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서 소득불평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년기 직종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변동이 심하지만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 1.8%에서 최고 5.7%에 달해, 교육수준에 비해서는 직종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고용형태보다는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년기 직종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변동이 심해 전반적인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중년기 직종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횡단면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997년을 제외하면 50~54세 집단이 55~59세 집단에 비해, 그리고 60~64세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중년기 직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령집단별 가구소득에 대한 직종별 소득불평등(대수편차 평균) 요인분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집단	전체불평등	0.5630	0.4751	0.4171	0.5121	0.5524	0.4656	0.4421	0.3386
	집단내불평등	94.7	95.6	94.7	94.7	97.3	94.3	96.2	98.2
	집단간불평등	5.3	4.4	5.3	5.3	2.7	5.7	3.8	1.8
50~54세	전체불평등	0.4714	0.3527	0.2696	0.3371	0.2784	0.1866	0.2902	0.2329
	집단내불평등	97.7	93.7	90.7	88.9	92.7	89.3	95.7	93.1
	집단간불평등	2.3	6.3	9.3	11.1	7.3	10.7	4.3	6.9
55~59세	전체불평등	0.4649	0.5060	0.3658	0.3635	0.6381	0.3915	0.3338	0.3493
	집단내불평등	96.5	98.9	97.7	96.9	96.1	99.1	98.1	91.8
	집단간불평등	3.5	1.1	2.3	3.1	3.9	0.9	1.9	8.2
60~64세	전체불평등	0.5248	0.5492	0.4654	0.5881	0.5008	0.5092	0.5156	0.3025
	집단내불평등	93.1	92.8	90.8	87.5	84.1	83.7	92.6	95.1
	집단간불평등	6.9	7.2	9.2	12.5	15.9	16.3	7.4	4.9
65세 이상	전체불평등	0.7590	0.4469	0.4830	0.6580	0.6853	0.6646	0.5033	0.3303
	집단내불평등	85.9	95.6	98.0	98.8	95.1	96.2	95.4	97.0
	집단간불평등	14.1	4.4	2.0	1.2	4.9	3.8	4.6	3.0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성고령자 집단에 한정하여 연령의 증가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공적·사적 이전소득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그리고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종단면 자료 분석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소득불평등과의 연관관계를 관찰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규명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는 동년배 집단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연령 증가와 소득불평등과의 연관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공적·사적 이전소득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적·사적 이전소

득 모두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매해 변동폭이 비교적 큰 데 비하여,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고연령집단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는 사회보험 수급률이 가장 높은 60~64세 집단이 거의 매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에서 2000년까지는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를 압도하였으나, 2001~2003년까지는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공적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매해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 중년기 직종, 중년기 고용형태의 순서대로 소득불평등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수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종단면으로 살펴보면 매해 변동이 심해 일정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횡단면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50~54세 집단이 55~59세 집단에 비해, 그리고 60~64세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이들 변수가 설명하는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집단별 차이는 이들 변수와 근로소득간의 밀접한 관계와 퇴직자 비율의 차이, 그리고 공적 연금 수급대상자 비율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남성고령자가 과거 생애주기 동안 경제적으로 유리/불리하였던 조건이 누적됨에 따라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중년기 고용형태나 직종보다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중년기 근로소득과의 밀접한 연관관계 등으로 인해 노년기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횡단면 자료 분석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2002년 이후 사적 이전소득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더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부양 가족의 경제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그 부양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서는 2002년 이후 공전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에 비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에 걸쳐 사적 이전소득 개선효과가 공적 이전소득 개선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의 집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고연령이 되었거나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의 감소·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집단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1998년 경로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인집단을 위한 무갹출노령연금의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급여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노인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지대 밖에 놓

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65세 이상 집단의 노인과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집단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또는 무갹출노령연금 대상자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한계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성고령자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농촌거주 남성노인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이전제도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경상소득에서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를 뺀 가처분소득의 소득불평등 효과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였을 때에는 본 연구결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낮게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진욱(2004)과 박찬용(2003)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고령자의 가처분소득의 소득불평등 분석결과가 본 연구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개념과 측정방법 및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다르므로, 향후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고령자의 중년기 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다루기에는 본 연구의 관찰기간이 다소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기간에 걸쳐 패널자료를 축적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인회·손병돈(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한국노년학』, 25(4), 35-52.

김교성(2003).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 181-204.

김진욱(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20, 171-195.

박경숙(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박찬용(2003). 「한국의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 분석」. 『공공경제』, 8, 61-94.

보건복지부(1999). 『1999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05).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석재은(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51-78.

이가옥·이현송·김정석·이미진(2002). 「인구특성별 삶의 질 비교」. 『노인복지정책연구』, 11, 115-186.

임병인·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패널 제 6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경희외(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05a).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2005b).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실시(2005. 5월 실시)』.

최병호·김태완(200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과 전망」. 『사회보장연구』, 21(3), 205-231.

최성재(1999).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 1999년 세계 노인의 해 기념 한국노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한국노년학』, 22(3), 223-244.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최희경(2004).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2), 237-259.

홍경준(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Campbell, R. T., & Henretta, J. C. (1980). Status claims and status attainment: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3), 618-629.
Crystal, S. (1996).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San Diego: Academic Press.
Crystal, S. & Waehrer, K. (1996). Late-life economic inequality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51B*(6), s307-s318.
Dannefer, D.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the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58B*(6), s327-s337.
Henretta, J. C., & Henretta, J. C. (1976). Status attainment and status maintenance: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old 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6), 981-992.
McLaughlin, D. K., & Jensen, L. (2000). Work history and U. 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Gerontologist, 40*(4), 469-479.
Prus, S. G. (2000). Income equality as a Canadian cohort ages. *Research on Aging, 22*(3), 211-237.
Xiao, J. J., Malroutu, Y. L., & Yuh, Y. (1999).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2), 49-59.